

프랑스 병역제도와 병역법제에 관한 연구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I. 개관
- II. 여군제도의 운영
- III. 국방예비교육제도와 지원병제의 운영
- IV. 병역법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I. 개관

프랑스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기본법은 병역법전(Code du service militaire)이다. 병역법전은 크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은 병역과 관련된 일반조항과 지원병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권은 병역의 정의와 원칙, 다양한 병역제도, 각 병역제도의 개별 조항, 처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징병제를 취하다가 2001년부터 지원병제로 전환하였지만,

전통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인정하여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재에도 남아있어서 선거법전(Code électoral) 입법편(partie législatif) 제45조는 국민의회 의원(députés)과 도의회 의원(conseillers généraux) 그리고 시의회 의원(conseillers municipaux) 선거에서 병역법전(Code du service national)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원병제로의 전환은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직접적인 대치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병력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걸프전 이후에 저장도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분쟁에 개입하기 용이한 전투력의 재편이 요구되는 등 전쟁의 양상이 변화한 것이 큰 이유였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정치권의 결단이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

환이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과거 징병제 하에서 병역을 위한 기본원칙은 철저한 국민개병주의 고수, 다양한 의무수행제도 도입, 군 소요의 우선 충족, 직업 및 사회·학교생활과 연계되어 징집 해당자들에게 의무수행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병역제도 하에서 징집병, 지원병, 장기복무지원,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였다. 현역복무 형태는 징집병, 지원병, 장기복무지원자, 해외복무병, 기타 정보처리장사, 사관학교 교원, 징집관련 과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군 복무형태의 유지는 병역의무 수행에 있어서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군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체적인 합격자이지만 현역복무를 면제하여 예비역으로 직접 편입되는 제도도 운영하였었다. 현역 복무 면제는 고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프랑스를 위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등에 대한 보상명목의 면제, 본인 입영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특수한 전통 가내공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2년 이상의 기업체의 장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면제, 29세 이상으로 연령이 너무 높은 자, 이종국적 보유자, 원거리의 해외거주자 등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면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잉여병력자원의 해소 및 국민의 병역부담 완화에 대한 민의를 받아들여 기존에 12개월이던 복무기

간을 1991년에 10개월로 2개월 단축하였었다.

또한 병역의무 대상 기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체복무분야 근무자의 규모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군복무 형태와 유사한 소방이나 경찰업무 지원을 제외하고는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유지하였는데, 방위단이라 하여 주민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방위관련 기구의 의무부과나 본인지원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10개월의 복무기간이 부과되었고,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국립경찰의 경우 소집에 의하거나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10개월의 복무기간이 부과되었으며, 소방 관련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방 및 구조업무 보조를 하고 소방관련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시민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시민 안전단의 경우에도 10개월의 복무기간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지방관서나 해외 관할 영토의 발전업무 및 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지원단이나 대외협력단의 경우에는 16개월의 복무기간이 부과되었고, 종교적인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인도적인 시민봉사기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20개월의 복무기간을 부여하였다. 대체복무 분야에 근무하는 복무인원은 1991년 징집병의 4.6%에 달하는 13,100명 정도였으나 병역자원이 크게 증가한 1996년의 경우는 징집병의 6%정도였다.¹⁾

1) 세계동원의 역사,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2004. 12, 811면.

II. 여군제도의 운영

프랑스는 1972. 7. 13. 법령으로 여군제도를 확립하였다. 내부 진급과정 및 경쟁 과정을 거쳐 병, 부사관, 장교로 승진 및 임명이 되는 신분상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역 시 관공서와 기업체에 우선 배려하고 있다. 1998년 병과 제한제 및 쿼터제가 폐지되어 거의 모든 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근무조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따라 잠수함 근무 등 극히 일부직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근무 조건에서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며, 여군도 함정의 각 분야에 골고루 배치하고 여군도 능력에 부합되는 경계근무, 사열, 함정 정비에 투입하며, 기항 시 상황에 따라 기항국 실정에 비추어 육상 경계 근무에도 투입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과정을 거쳐 임용되고, 진급 및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이 원칙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 및 자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군내 여성 관련 정책의 전담 부서나 별도의 여군을 감안한 교육 제도는 없다. 따라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응시하여 공군도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하여 모든 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다. 여자 전투기 조종사 및 여러 명의 헬

기 조종사가 배출되었다. 해군에서는 잠수함 근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항모, 항공기 조종사, 특전대 포함)에 여군이 근무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군함에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 기혼의 자녀를 둔 여성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함정 근무가 가능하다.

프랑스 군은 여군에 대한 특별 정책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여군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산 휴가 등 일반 고용법에 근거한 복지혜택은 부여된다. 프랑스 군은 법정 연가가 약7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서 연중 45일)이며, 여군의 법정 출산 휴가는 16주로 여군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휴가에 연가를 합치면 약6개월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을 앞둔 여군은 소속 총무과에 출산휴가 기간을 미리 통보하여 출산 휴가는 적어도 출산예정일 15일 이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²⁾ 프랑스 병무행정 담당기관은 국방부 행정총국 산하 병무국(Direction du Service Nationale)이다. 병무국은 7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국내에 5개의 지방사무소가 있고 해외 영토에 2개의 사무소가 있다. 이외에 12개의 병무국 지부를 두고 있으며, 21개의 병무센터를 두고 있고, 4개의 분소와 1개의 군사행정 사무국을 두고 있다.

2) 독고순, 조영진, 신동현, 김윤정,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5. 11, 64-65면.

III. 국방예비교육제도와 지원병제의 운영

지원병제를 채택하였지만 국방상의 이유로 16세에서 18세까지의 남녀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일 간 안보소집교육인 국방예비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국방은 국민들만의 관심사항이 아닌 모든 국민의 과제임을 주지시키고 선배들의 희생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일반 원칙과 국방을 위한 제반 수단에 대한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영토 250개 교육장에서 매주 수요일 및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이수 후 수료증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구비서류로 포함된다.³⁾

프랑스 국민은 만16세가 되면 국방예비소집을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198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중 자진 등록을 못한 자는 늦어도 25세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호적, 주민등록증(또는 여권),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며, 관할 시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예비소집을 위한 예비 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각 지방 병무관서로부터 받은 서류에 국방예비소집 참가 희망일을 적어 병무 사무소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 예비소집에 참가하게 되면 각 도별로 거주지에 가까운 교육소(지정된 군부대 또는 민간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군부대 소속 현역 군인이나 또는 예비군이 교육을 하게 된다. 소집에 참가하게 되면 교통비 및 중식이 제공된다.

지원병제도의 운영은 각 군별 모집분야 및 자격 등 세분화하여 모집한다.

육군의 모집분야는 총 400개 직종별로 응시자격을 세분화하고 있다. 응시직종은 전투, 지원, 통신/정보, 정비, 행정, 인력자원, 기타(통합군 직종, 체육, 군약)이며, 지원자격은 17.5세에서 29세까지의 프랑스 국적자이다. 선발방법은 3일 간에 걸쳐 신체/심리검사, 체력시험(달리기, 장애물넘기, 턱걸이), 면접으로 구성된다. 복무기간은 4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해군의 모집분야는 함재기 항공관리, 함정일반, 경비, 해군 소방대이다. 지원자격은 만18세에서 22세까지의 프랑스 국적자로서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을 합격한 사람이다. 복무기간은 3년이며, 1차로 4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군의 모집분야는 행정/경영, 무기, 통신, 운전, 경제, 법학, 전자기술, 시설유지/논지관리, 정보통신, 경호, 기계학, 기상학, 요식 등이다. 지원자격은 만17세에서 23세까지의 프랑스 국적자로서 모집분야에 따라 응시 자격(학력, 체력, 적성 등)이 상이하다. 복무기간은 분야별, 학력별로 1년에서 10년까지이다.

예비군도 지원제를 원칙으로 하며, 퇴역 군인,

3) 김문성, 병무행정론, 병무청, 2005, 67면.

계약 군복무 만료자, 군에서 필요한 특기자 및 전문인 중에서 선발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각 부대에 배속한다. 복무기간은 계약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이며, 계급별로 정규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비군 선발자는 법률에 의한 고용계약에 따라 예비 복무를 위해 1년에 최소 5일에서 30일 까지 직장 결근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외 작전 시에는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예비군이 작전지역에 파견될 경우 직업계약이 중단되거나 휴가, 근무연수, 사회보장혜택,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고용주는

해당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해고할 수 없다. 예비군의 임무는 다양한 위기 및 국내의 특수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정규군을 보강하고,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증력과 군의 수단을 보강하며 군과 민간 사회 간의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⁴⁾

IV. 병역법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병역법의 전체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제1권

제1장 병역관련 일반조항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제1절 원칙(Principes (Articles L111-1 à L111-3))

제2절 적용 영역(Champ d'application (Articles L112-1 à L112-6))

제3절 명부작성(Le recensement (Articles L113-1 à L113-8))

제4절 국방교육과 국방예비소집(L'enseignement de la défense et l'appel de préparation à la défense (Articles L114-1 à L114-13))

제5절 국방이행기간(La période militaire d'initiation ou de perfectionnement à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s L115-1 à L115-2))

4) 김문성, 전계서, 67면.

제2장 지원병 관련 조항
(Dispositions relatives aux volontariats)

제1절 군 지원병(Le volontariat dans les armées (Articles L121-1 à L121-3))

제2절 시민 지원병(Les volontariats civils)

제1부 시민 지원병 원칙(Principes de volontariats civils (Articles L122-1 à L122-9))

제2부 시민 지원병의 권리와 의무(Droits et obligations du volontaire civil (Articles L122-10 à L122-17))

제3부 잡칙(Dispositions diverses (Articles L122-18 à L122-20))

제4부 해외 영토 조항(Dispositions relatives à l' outre-mer (Article L122-21))

제3절 적응을 위한 지원병(Le volontariat pour l' insertion (Articles L130-1 à L130-4))

제II권

제1장 병역의 정의와 원칙
(Définition et principes du service national)

제1절 일반 조항(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L1 à L8))

제2절 병역 적용 일반 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s emplois du service national (Articles L9 à L14))

제2장 다양한 병역 형태의 공동조항
(Dispositions communes aux différentes formes de service national)

제1절 명부작성과 선발(Recensement, sélection)

제1부 명부작성(Recensement (Articles L15 à L22))

제2부 선발(Sélection (Articles L23 à L28))

제2절 병역의무면제와 개별 적용형태(Exemptions, dispenses et modalités particulières d' accomplissement des obligations d' activité du service national)

제1부 면제(Exemptions (Article L29))

제2부 면제(Dispenses (Articles L31 à L40-1))

제3부 처벌(Condamnés (Articles L51 à L60))

제3절 신체적 부적격자(Réforme pour inaptitude physique (Article L61))

제4절 병역이행으로 인한 권리(Droits résultant de l'accomplissement du service national actif (Articles L62 à L65))

제3장 다양한 병역형태의 개별 조항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x différentes formes du service national)

제1절 군 복무(Service militaire)

제1부 정의(Définition (Articles L67 à L69))

제2부 현역군(Service militaire actif (Articles L70 à L77))

제3부 예비역 충원(Recrutement des cadres de réserve du service militaire (Articles L78 à L79))

제4부 예비역(Disponibilité et réserve du service militaire (Articles L80 à L85))

제2-2절 국립경찰복무(Service dans la police nationale)

제1부 일반 조항(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L94-1 à L94-2))

제2부 권리와 의무(Droits et obligations (Articles L94-3 à L94-10))

제3부 국립경찰 예비역(Disponibilité et réserve dans la police nationale (Articles L94-11 à L94-15))

제2-3절 시민안전단(Service de sécurité civile (Articles L94-16 à L94-20))

제3절 기술지원단과 해외협력단(Service de l'aide technique et service de la coopération)

제1부 정의(Définitions (Articles L95 à L96))

제2부 공동 조항(Dispositions communes)

제1 단락 일반 조항(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L97 à L101-1))

제2 단락 권리와 의무(Droits et obligations (Articles L102 à L108))

제3 단락 잡칙(Dispositions diverses (Articles L109 à L111))

제3부 기술지원단의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de l'aide technique (Article L112))

제4부 대외협력단의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de la coopération (Articles L113 à L115))

제4절 양심적 거부자(Service des objecteurs de conscience (Articles L116-1 à L116-9))

제4장 처벌 조항과 규율 (Dispositions pénales et disciplinaires)

제1절 일반 조항(Dispositions générales)

제1부 형벌조항(Dispositions pénales)

제1 단락 기만(Fraudes (Articles L117 à L121))

제2 단락 불복종(Insoumission (Articles L122 à L131))

제3 단락 예비역의 의무위반(Infractions aux obligations dans la réserve (Articles L133 à L134))

제2부 규율과 행정(Dispositions disciplinaires et administratives (Articles L135 à L136))

제2절 병역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militaire (Article L137))

제3-2절 국립경찰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dans la police nationale (Articles L149-1 à L149-10))

제3-3절 시민안전단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de sécurité civile (Article L149-11))

제4절 기술지원단과 대외협력단 개별조항(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 service de l'aide technique et au service de la coopération (Articles L150 à L159))

병역법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㉔ 국민은 국방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병역이행을 통하여 수행된다(제111-1조).

㉕ 병역은 병역대상자의 명부작성, 국방예비소집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징집과 징병제도병역에 포함된다. 국방예비소집은 국방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공동체의 소속감 강화와

국가, 청소년 간의 연계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징병제는 직업군인, 지원병, 예비군과 함께 국방을 위해 입법부가 결정한 병력의 수를 확보하게 한다(제111-2조).

㉔ 지원병제는 공익 임무차원에서 국방공동체에 대안 일시적 지원, 국가 소속감 및 연대감 진흥을 목표로 한다. 지원병제는 국방, 안전, 예방, 사회결속 및 연대감, 국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분야에서 실시된다. 해외영토 및 해외 자치부에서 시행되는 기술지원 지원병제는 사회결속 및 연대감 차원의 별도 지원병제이다(제111-3조).

㉕ 병역법전 제1권은 197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하고 동일년도 병역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남자 및 198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하고 동일년도 병역 대상자 명부에 포함된 여자에게 적용되며, 이 여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병역대상자 명부에 오른다(제112-1조).

㉖ 징병제는 197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프랑스인으로 동일년도 병역대상자 명부에 소속된 자부터 중단된다. 징병제는 국방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혹은 군에 부여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언제든지 부활한다(제112-2조).

㉗ 1980년과 1981년에 출생한 남자는 17세에 명부에 등재된다(제112-3조).

㉘ 197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남자가 명부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병역법전 제1조부터 제159조가 적용된다(제112-5조).

㉙ 198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여자는 군 예비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제112-6조).

㉚ 16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 국민은 병역대상자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제113-1조).

㉛ 병역대상자 명부작성시 프랑스인은 결혼여부, 가족상황, 학력, 직업 등과 관련하여 거주지 시청이나 혹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은 신고자에게 병역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13-2조).

㉜ 16세와 25세 사이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상기 연령 사이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전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과 동시에, 후자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결정에 의한 법적 효력 발생 즉시 병역대상자 명부작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법전 제18-1조, 제19-4조, 제21-8조 및 제22-3조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동 권리소멸 기한까지 병역대상자 파악이 연기된다.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병역대상자 파악일부터 국방예비소집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대상자는 병역법전 제114-4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집된다(제113-3조).

㉝ 병역대상자 명부등록 의무가 있는 자는 25세 이전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과정에 있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제113-4조).

㉞ 병역 대상자 명부에 누락돼 있는 프랑스 국민은 25세까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이후 첫 번째 병역대상자 명부에 등재된다(제113-5조).

㉓ 병역대상자 서류관리는 병역담당기관이 한다(제113-6조).

㉔ 등재된 이후 25세까지 프랑스 국민은 병역담당기관에 주소지 변경 및 기타 가족상황, 직업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13-7조).

㉕ 국방 및 유럽 방위의 원칙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모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동 교육은 국방의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군 및 국민간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법전 제312-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교육이 구성된다(제114-1조).

㉖ 위 교육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로 프랑스 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국방예비소집이 조직된다. 국방예비소집은 병역대상자 확인일자와 해당인의 18세 생일 사이에 실시된다. 국방예비소집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제114-2조).

㉗ 국방예비소집의 경우, 프랑스 국민은 양성평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국방의 목적 및 목표, 민·군 방위 수단 및 조직, 지원병제도, 군 예비교육, 기타 군내 다양한 복무형태, 예비군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응급처치의 견습생처럼 위험예방과 구조임무의 교육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어로 견습생 평가를 받는다. 국방예비소집의 경우 프랑스 국민은 6개월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회보장법전 제321-3조에 규

정된 무료건강검진을 위하여 의료보장기관에 의하여 소집된다(제114-3조).

㉘ 프랑스 국민은 국방예비소집에 참가하기 위하여 병역 관할 관청에서 제시하는 3개의 날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제114-4조).

㉙ 18세 생일까지 국방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은 25세까지 동 소집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병역관련 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을 위해 소집된다(제114-5조).

㉚ 25세 전에 행정관청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방예비소집에 참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14-6조).

㉛ 신체장애자는 국방예비소집의무에서 제외된다(제114-7조).

㉜ 외국에 거주하는 25세 미만의 프랑스 국민은 재외공관장의 책임 하에 거주국의 제약에 따라 별도로 조정된 국방예비소집에 참가한다(제114-8조).

㉝ 25세 미만의 프랑스 국민 중 병역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병역법전 제114-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누락사실이 발견된 후 6개월 이내에 국방소집에 응하여야 한다(제114-9조).

㉞ 국방예비소집에 응하는 자는 징집병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국가책임 하에 있게 되며, 국방예비소집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및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이 정하는 계산

에 따라 전면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임대시설 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제114-10조).

㉔ 국방예비소집이 실시되는 시설의 기관장은 병역 담당관청과 함께 건물 임대방식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제114-11조).

㉕ 프랑스 국민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국방예비 교육을 통하여 국방예비소집을 연장할 수 있다(제114-12조).

㉖ 국방이행기간은 그 적용 형태를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안으로 조직된다. 국방이행기간은 16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프랑스 국민에게 인정된다(제115-1조).

㉗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이나 혹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 보상을 받는다(제115-2조).

㉘ 모든 프랑스 남성과 여성은 국방법전 제4132-6조, 제4132-11조, 제4132-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병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제121-1조).

㉙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여성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남자와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는 지원병으로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제121-2조).

㉚ 지원병으로 근무한 프랑스 국민은 지원병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한다(제121-2-1조).